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세 정 과
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

구 미 시
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2027년도 구미시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
나. 출연 예정금액 : 46,050천원(시비 100%)

다. 출연필요성

「지방세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

라. 법적근거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3. 참고사항

가. 첨부서류

1) 출연 동의요구서(붙임)

2) 출연기관 현황(붙임)

3) 출연 사업계획서(붙임)

나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다.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(46,050천원)

라. 합　　의 : 예산재정과

1) 출연 동의요구서

주관부서	세정과

기 관 명	한국지방세연구원
출연대상	○ 일반현황 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- 주요사업 ·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·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
출 연 사 업 비	○ **출연 예정금액 : 46,050천원(시비 46,050천원)**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

구 분	2026년도 출연금	2027년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
		연구원 요구액	부 서 산정액	증 감	
출연금 (시비 100%)	39,231	46,050	46,050	-	증6,819

출 연 필 요 성	○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
근거·법령	○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· 운영) ○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· 운용) ○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지도감독 부서의견 (총 평)	○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정기 간행물 발간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, ○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,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 ○ 특히,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첨부자료	1. 출연기관 현황 2. 출연사업계획서

2) 출연기관 현황

한국지방세연구원

<table>
<tr><td>설립근거</td><td colspan="3">법 률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</td><td>전화번호 : 02-2071-2748
홈페이지 : www.kilf.re.kr</td></tr>
<tr><td>주요연혁</td><td colspan="2">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,</td><td>기관형태 (출자, 출연)</td><td>- 출연</td></tr>
<tr><td>인원현황 (2026년 8월 기준)</td><td colspan="4">
<table>
<tr><td rowspan="2">구 분</td><td rowspan="2">계</td><td rowspan="2">원장</td><td colspan="4">연구관련직</td><td rowspan="2">사무직 시설직</td></tr>
<tr><td>연구위원직</td><td>연구원직</td><td>조사분석직</td><td>전문직 등</td></tr>
<tr><td>정 원</td><td>78</td><td>1</td><td>24</td><td>18</td><td>8</td><td>10</td><td>17</td></tr>
<tr><td>현 원</td><td>61</td><td>1</td><td>16</td><td>10</td><td>8</td><td>9</td><td>17</td></tr>
<tr><td>총인원</td><td>91</td><td colspan="5">정원외 인원 30명 (파견공무원 12, 위촉직 연구·전문·행정원 등 18)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임 원 (2026년 9월 기준)</td><td colspan="4">
<table>
<tr><td>직 책 (직책명)</td><td>성 명</td><td>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</td><td>비 고</td></tr>
<tr><td>이 사 장</td><td>정 종 섭</td><td>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</td><td>2024.2.2. ~ 2027.2.1.</td></tr>
<tr><td>부이사장</td><td>성 낙 인</td><td>경상남도 창녕군수</td><td>2026.3.13. ~ 2027.3.12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신 승 근</td><td>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</td><td>당 연 직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이 현 정</td><td>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</td><td>당 연 직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임 재 근</td><td>서울특별시 재무국장</td><td>2026.9.9. ~ 2027.9.8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박 민 범</td><td>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장</td><td>2026.9.9. ~ 2027.9.8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박 중 근</td><td>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</td><td>2026.9.9. ~ 2027.9.8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양 제 윤</td><td>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</td><td>2026.9.9. ~ 2027.9.8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김 성 수</td><td>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</td><td>2026.3.13. ~ 2027.3.12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김 병 내</td><td>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</td><td>2026.3.13. ~ 2027.3.12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조 규 일</td><td>경상남도 진주시장</td><td>2026.3.13. ~ 2027.3.12.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이 상 범</td><td>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</td><td>2025.8.30. ~ 2027.8.29.</td></tr>
<tr><td>감 사</td><td>김 정 선</td><td>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</td><td>당 연 직</td></tr>
<tr><td>감 사</td><td>김 옥 흔</td><td>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</td><td>2026.3.5. ~ 2028.3.4.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주요기능</td><td colspan="4">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</td></tr>
<tr><td>설립자본금 (단위:백만원)</td><td colspan="2">1 (직전연도말 기준)</td><td>출자・출연액 (단위:백만원)</td><td>150,296 ('11~'26 까지 지자체가 출자・출연한 금액)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</td><td>연도</td><td>2024</td><td>2025</td><td>2026</td><td rowspan="4">재무현황 (백만원) '25.12.31기준</td><td>자산</td><td>28,531</td></tr>
<tr><td>예산액</td><td>17,813</td><td>17,467</td><td>17,247</td><td>부채</td><td>1,583</td></tr>
<tr><td>지자체 지원액</td><td>13,079</td><td>12,415</td><td>10,470</td><td>자본</td><td>26,948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25.12.31기준</td><td colspan="3">총수익</td><td colspan="2">총비용</td><td>당기순이익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3">17,600</td><td colspan="2">16,554</td><td>1,379</td></tr>
</table>

3) 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	구분	출자	해당없음
주관부서	세 정 과		출연	46,050천원(시비)

1 목적 및 필요성

○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○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

2 출연개요

○ 연구원 운영 예산('26년: 17,247백만원) 중 10,470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
○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

3 산출기초

○ 출연액 : 46,050천원
○ 전전년도 보통세의 1.0/10,000를 출연
-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 (단위 : 천원)

구 분	합 계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
출연금	251,583	45,986	49,767	59,447	57,152	39,231

4 기대효과

○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○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5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○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, 지방재정·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
○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□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0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2.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 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○ 매년 전전년도('25)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(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제1항)

○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1만분의 1.0 (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)

※ ('20 이전) 1만분의 1.5 → ('21) 1만분의 1.3 → ('22) 1만분의 1.2→ ('26) 1만분의 1.0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> **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** ① 구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>
> **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**

3. 미첨부 사유

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4. 작성자

세정과 도세팀 오윤창 (☎ 480-6852)

소 관 부 서		세 정 과
입	과 장	문 영 후
안	팀 장	조 진 희
자	담 당 자	오 윤 창 (480-6852)